

登錄金 策정의 合理化 方案

金 南 淳

(朝鮮大 敎職科)

1. 大學 登錄金制度的 變遷

우리나라의 열악한 敎育環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 재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관심이 대학의 質的 향상은 물론 전체적인 대학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명실공히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선진국으로 進入하는 선도적인 역할 담당자로서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학 발전 과정에 있어서 재정의 원천은 대부분 受益者 負擔의 원칙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져 온 과정이었음은 여러 사실들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러한 수익자 일방의 부담은 재정 규모의 영세성과 환경의 낙후, 그리고 이에 따른 敎育의 質的 低下는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 본래의 기본적인 當爲性마저도 의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의 대학교육 재정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중의 일부분으로서 대학의 登錄金 제도에도 부분적이거나 새로운 合理性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 재정의 확충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對內·外的인 입장은 물론, 대학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대학 재

정의 확충 방법과 등록금 제도의 합리적인 운용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지금까지 대학교육 재정의 基核을 이루는 등록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대학 발전 과정에서의 등록금 제도와 현 대학 재정의 문제점을 간단히 논의한 다음에 대학 등록금의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나라 舊敎育制度에서의 고등교육은 신라의 國學 이후 幽子監, 成均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거치면서 발전되다가 新學問이 유입되면서 급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해방 이후 정착된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의 고등교육은 대체로 국가의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고등교육이 운영되었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역시 대부분은 國費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후 신학문 유입에 따른 고등교육의 확대와 더불어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해방 이후부터 대학교육이 확고한 공교육으로서의 자리를 잡게 되고 敎育 제도와 내용 및 행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은 국·공립에 대한 일부의 정부 부담을 제외한 대부분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중심적인 바탕을 두고 운영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이 敎育의 대상이나

형태상 소수의 엘리트 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대중교육의 형태를 취하면서부터는 더욱 급진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학의 운영 문제이며, 특히 등록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제정의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문교 정책은 해방 이후 정부 수립과 동시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의 바탕이 고등교육의 확충과 교육의 기회 균등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 수 많은 私學들이 설립되어 국민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배려와 일반 국민들로부터 나타난 교육의 熱氣와는 달리 기본적인 여건은 매우 보잘것 없는 상태이었다. 國民經濟 수준의 貧困과 國力の 虛弱性은 대학으로 하여금 劣惡한 教育施設과 環境, 교수의 부족과 圖書의 빈곤 등을 면치 못하게 했다. 이러한 교육 재정의 빈곤을 대변하는 내용상의 실례는 대학의 구실을 다하기 어려운 형편의 대학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로 나타났다. 여기에 雪上加霜으로 일부에서는 私學財困이 나타나고 다양한 형태의 便法的인 사학 운영의 결과로 사회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사회 문제까지 飛火되게 하였다. 한국 전쟁 직후 일부의 대학들은 외국 원조와 정부의 土地改革 정책의 영향에 따라 大地主들로부터 일부의 지원금과 당국의 지원을 받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형태이었기 때문에 劣惡性을 면치 못했다. 특히 당시의 대학 인가 기준이 매우 단순한 조건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립대학의 기업화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의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들은 처음 시작부터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서 대학의 質的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量的暴增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오늘날과 같은 대학 문제를 惹起하는 출발점의 誤謬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經濟成長 一邊倒의 정책과 이에 따른 고등 교육 인구의 급증 현상, 그리고 그 이전의 일부 政府官吏의 腐敗와 사회의 혼란 등을 이유로 1961년 大學整備의 법적 조치로서 '교육에 관한 臨時特例法'(일시특별법 중 대학 재정에 관

한 내용으로는 “전국 대학의 총 정원 수는 국가의 人的 需要와 設立者의 經費負擔 能力, 국민의 교육비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문교부 장관이 정한다”)이 제정된다. 이어서 1968년에는 장기종합교육계획 심의회를 발족시켜 고등교육 개혁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1980년의 7·30 조치(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의 해소 방안), 1987년의 6·29 조치(자치와 자율이 주요 골자이며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대학의 자율화로 학생의 학비 조달 지원 확대와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및 대학 정원의 자율화 등이 단·장기안으로 포함됨) 등이 단행되면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量的 變化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質的 向上의 욕구를 채원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해 왔으며 급기야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하나로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에 대한 법규 정도 1969년 7월 19일 문교부령 제 211호로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32차에 걸친 변화를 거듭하면서 대체적으로 국·공립을 중심으로 문교부의 통제하에 이루어지던 등록금 제도가 지난 1988년 9월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일대 변화를 가져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現行 大學 登錄金制度와 大學財政의 特性

대학 발전의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는 大學教育의 質的 向上이고, 질적 향상의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大學財政이라는 사실은 여러 논의를 통해서 이미 살펴 본 바이다. 이러한 대학 재정의 증액을 이루는 등록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사용되는가”, “그러한 돈이 어떻게 거두어 들여져야 하고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현행 제도를 살펴 보아야 한다. 合理的인 대학 재정의 選用을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필요가 분석되고 조달 방법이 具案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행 제도에서 教育財政의 必要算出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다. 필요의 산출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실과 미래의 방향점이 구

계적으로 분석·검토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늘의 대학 현실은 지나치게 열악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 보자.

많은 기업들은 大學教育의 결과를 不信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기기들을 조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실험실에는 현대적인 기기들이 없어서 조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전공 교과와 학생 정원은 광범위하게 확장해 놓고 이를 가르칠 만한 환경은 20년, 30년 전의 그것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대학들이 부지기수이다. 학생들을 대학 재원을 조달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학생 수의 확장에만 급급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이렇듯 어려운 현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상들을 살피 봄으로써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카즈—교수의 ‘대학교육 재정의 국제 비교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은 GNP 대비 교육 재원이 낮은 편인데(선진국의 경우 4.5~6.7%, 우리나라의 경우 3.2%), 그러한 GNP 자체도 낮기 때문에 그 규모가 평균 이하이다. 학생 1인당 경상 교육비의 규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86년에 1,430S인 데 비하여 일본은 5,471S('83년), 미국은 6,255S('85년), 그리고 영국은 5,542S('83년)로 우리나라의 3~4 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원의 구성도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 납입금 부담 규모가 70%(전체로는 국고 부담이 14.1%, 재단 부담이 11.4%, 기타가 4.5%이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국고 부담이 50.5%, 등록금 부담이 44.8%이며, 사립의 경우는 국고 부담이 1.0%, 등록금 부담이 79.1%이며, 재단 부담이 15.5%이고, 나머지는 기타이다)인 데 비하여 외국의 경우를 보면 서독과 영국의 경우 대부분 공·사립대학을 불문하고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일본의 경우 국립대학의 경우 정부 부담이 93%, 미국의 경우 공립대학은 59%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의 사용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경비가 인건비와 운영비(국립의 경우 79.6%, 사립의 경우 73.8%)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도서관의 장서 보유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교수당 학생 수, 각종 시설 및 교육 환경의

대부분이 열악함을 나타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대학교육 재정의 열악함은 보유하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며, 질 낮은 교육의 결과로 사회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國際關係에서의 위치는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학 재정 현실에서 또다른 문제는 大學財源을 確保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대학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부 보조와 학생 등록금,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과 일부의 재단 지원금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학 당국도 정부도 그리고 교육 수혜자 집단들도 구체적인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학교 당국은 정부와 재단에 의존하고 등록금에 기대어 유지해 왔다. 또한 정부는 부족한 教育財源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미루어 왔고, 미루어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 황폐해져서 황폐해진 대학 재정을 놓고 이제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다른 대학 재정의 중요한 요소인 학생들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등록금은 학교라는 형식적인 조직에 조직 구성원들, 특히 학교 교육의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附加되는 責任이고 義務이다. 따라서 어떠한 학교 단계의 교육을 막론하고 교육 조직은 교육 수혜자들과 입학 조건 및 교육 내용들을 중심으로 상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대학은 대학 자체의 教育理念과 目的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專攻學科와 敎科內容들을 제시하게 되며 학생들은 자신이 설정한 인생의 설계와 목표를 비교하여 바람직한 학교를 選定하고 시험을 치뤄 입학하게 된다. 또 학교는 그러한 수혜자들로부터 요구되는 다양한 요구들, 즉 학문적·직업적 사회 계층의 上昇手段的인 도구들을 학교 제학 기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학생들은 그에 상응하는 代價인 등록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등록금은 교육 기관, 즉 학교 조직과 학습자 간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근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통해서 협상되거나 타협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다양화·복잡화되면서 교육의 개념과 그에 따른 효과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공동의 측면에서 중요시되기 시작했으며 학교 조직에서도 교육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역할이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교육은 이미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집단의 질서와 공동의 체제 유지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내용은 義務·無償教育으로 이루어지거나 많은 부분들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大學의 登錄金은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입장이 있다. 첫번째는 학교 조직과 직접적인 교육 수혜자 간의 약속에 의한다는 시각에서 당연히 자신들에 필요한 교육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두번째는 교육 혜택이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의 수혜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의 혜택을 누리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기업 등이 다각적인 공동의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교육은 그 내용과 성격상 公的인 면이 많고 교육의 효과가 개인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입장에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대학교육을 위한 財政的 投資에 대한 効果가 다각적으로 評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대학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 성취도의 평가를 포함하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 개인의 所得과 地位向上 등 다양한 내용이 될 것이며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또 다른 투자를 위한 준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때문에 評價를 위한 구체적인 合議의 導出과 研究가 필요한 영역이며 결코 정부 당국의 몇몇 행정적 감사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다. 대학의 교육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며 기업과 사회가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학의 연구소에서는 사회 현상과 직결되는 연구 결과를 생산하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교과 내용과 방법들도 최대한의 미래지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들이 곧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制度上的 問題點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989년부터 모든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登錄金 自律化 이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일부의 대학에서는 한 학기가 지나도록 등록금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등록금 曷結로 가뜩이나 어려운 대학 재정에 더욱 어려움을 부가시키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은 지금까지의 확일화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에 피동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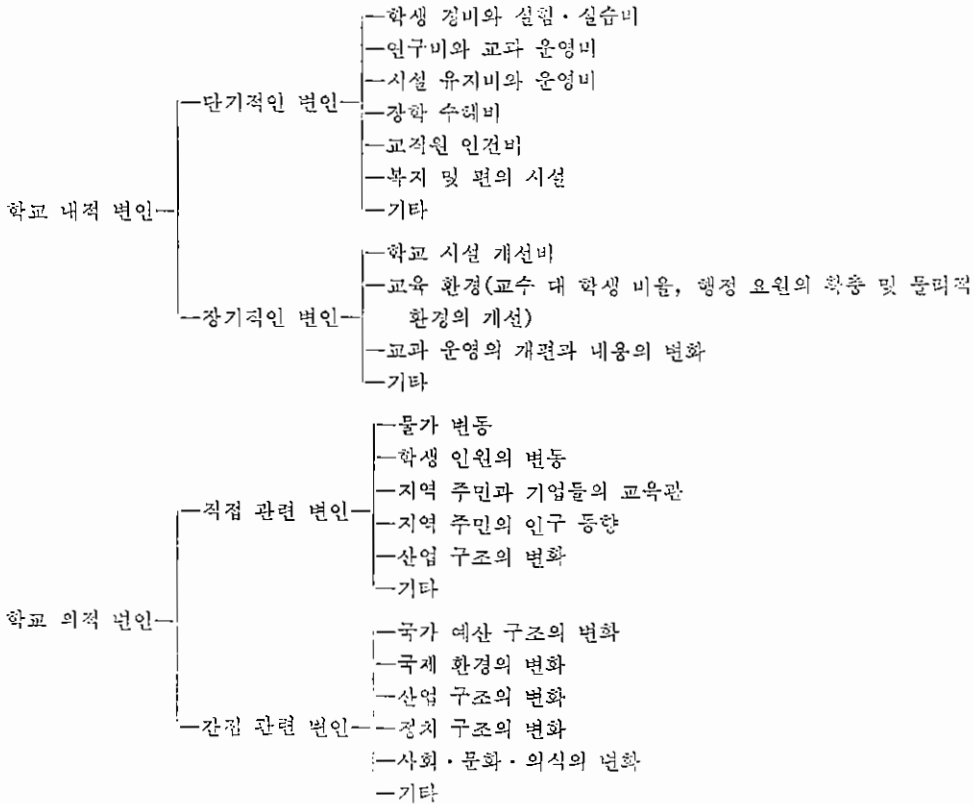
大學 登錄金の 自律化는 매우 바람직한 政策의 變換이나 이에 따르는 후속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文教行政當局이 등록금은 자율화해 놓고 제원 확보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며 제반 학사 운영과 기부금 입학제의 통제 등 지시와 통제의 구습을 고수한다면, 이는 곧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주의 근성의 잔재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수의 비양식적인 학교 운영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소치라면, 확일적인 통제 방식보다는 차원 높은 방법으로 선별·격리시키기 위한 制度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현상을 대학의 일로만 미루어 왔던 사회 역시 大學 發展이 곧 社會의 發展이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사고를 모아야 할 것이다.

3. 大學 登錄金の 合理的 運用

이상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대학 제정의 현실과 어려움에 터하여 발전지향적인 대학 등록금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의 등록금을 포함한 모든 財源들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의 秀越性과 多樣性, 그리고 自律性과 公正性에 바탕을 두고 책정·운용되어야 한다. 우선 대학교육에서의 수월성이란 보다 과학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다양성이란 교육 수혜자 개개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함은 물론 다양한 사

〈표 1〉 대학 재원의 필요 산정에 관련되는 변인들



회 구조를 수립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의 다양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필요한 내용들이 제시되고 활용되어야 함을 뜻한다. 또 이러한 교육 재정이 원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壓力集團이나 利害關係가 관련된 조직으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를 배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고유의 기능이 이루어지는 데 활용되도록 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 기술 및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교육의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이에 필요한 재정의 산출, 구체적인 운용 방법, 그리고 그 중요성의 우선 순위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대학교육의 自律性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를 대학 스스로 판단하여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교육 체권도 필요하면 발행하도록 하며 대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이나 인사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재

도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역기능과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사회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둘째, 대학의 登錄金 정책은 대학 재정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도록 산출하여야 하고 大學財政의 算出을 위해서는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필요가 分析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등록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의 책정에 사용되는 필요 산정에서는 최소한 위의 〈표 1〉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인들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최소 관련 변인들일 뿐이며 대학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요인들이 분석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필요한 재정 규모를 산출해 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깊은 識見과 선견적인 眼目을 가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충족시킬 방안들이 마련된 후에 독 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國家의 政策的인 차원과 地域社會의 도움, 그리고 배출된 고급 인력을 직접 활용하는 企業 등의 사용자들에 의한 노력과 협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재정의 확충에 학생들의 등록금만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스러운 생각이라는 전제 하에 이미 위에서 제시된 변인들 중 최소 요인들이 학생들의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예를 들면 단기적인 학교 내적인 변인과 직접적인 학교 외적 변인들로서 물가의 변동과 학생 인구의 변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비와 장학금, 시설 유지비, 실험·실습비, 학생 경비 등은 학생 스스로의 교육적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변인과 학교 외적 변인들 중 간접적인 변인들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 정부 아니면 지방 정부는 혹은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재단과 독지가들에 의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인들의 예를 들면, 학교 장기 발전 계획상의 시설·환경 건설의 비용과 일부의 특수 장학 혜택의 확대, 교수 연구비 등으로 대규모의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항목들이다. 왜냐하면 재정의 규모가 크기 때문일 뿐 아니라 재원 사용의 내용이 학생 개개인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국제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인들이기 때문이다.

셋째, 모든 필요가 산출된 대학 재원은 自律的인 調節 방법을 취해야 한다. 대학 재원의 필요는 전문가들에 의한 科學性과 合理性을 바탕으로 한 必要의 算定이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부담하는 중요한 주체는 교육 수혜자와 관련 집단들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의 산출과 효과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大學教育의 직접적인 受惠者로서 학부모들이 포함되고 전문가와 정부 및 지역 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는 自律機構가 운영되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구에 포함된 인사들은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시각과 인식을 결비하고 최소

한 대학교육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능력과 양식의 소유자이어야 할 것이며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의 재원이 부족하면 이를 확충해 주려는 노력을 보이는 인사들이어야 한다.

대학 자체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대학의 운영·관리자들은 더욱 많은 재원을 끌어 모을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사용된 財政의 効果는 다각적인 評價·分析의 절차를 갖도록 해야 한다. 대학 발전 원동력으로서의 財源은 다분히 대학의 質的 高揚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확보·활용된 재원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되었는가 평가·분석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필요의 산정과 차후 계획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평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대학 자체의 자율적인 것이어야 하고 대학의 모든 관련 집단들이 참여하는 평가 제도이어야 하며 외부의 간섭과 통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대학 스스로의 自敎策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大學財政의 운용은 彈力的이고 效率的이어야 한다. 현재 대학 등록금 책정은 개인의 능력(장학 제도), 가정 생활의 정도, 전공 계열별 경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물론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출신 지역에 따른 탄력적 운용 방법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예를 들면 대학 소재지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매우 저렴한 학비로 교육 기회를 제공함). 이는 대학 소재지 지역과의 유대 관계와 인구 분산 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 재원의 확충과 백을 같이하는 의미에서 연행 대학의 등록금 정책과 앞으로의 대학 등록금 책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4. 結 論

이상의 내용을 종합·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의 大學 發展過程에서 대학 재정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登錄金에 依存해 왔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대학교육을 劣惡한 환경에 방치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高級人力 開發의 餘地를 浪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의 投資効果는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教育財源의 부담자는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뿐 아니라 간접적인 수혜자들이 共同負擔해야 하고 그러한 대상들은 정부와 재단을 포함하여 기업체나 여타의 독지가들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은 현실 위주가 아닌 미래지향적·첨단적 교육이 이루어질 때 그 유지 능력이 확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 재정은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고 대학교육을 위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필요의 산정과 효과적인 확보 방안, 사용 방법 및 결과의 평가 방법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에 따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르 구성된 재정위원회 등의 專門機構가 필요하고, 이 기구에는 협조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학부형과 지역 사회 인사들이 참석하여 關係者들의 衆議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대학 등록금의 최일적인 책정보다 개인의 능력과 전공 학문의 영역, 그리고 출신 지역 등의 내용에 따라 多角的인 基準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彈力的인 運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교육 質의 向上은 대학교육을 위한 財源의 確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國籍的인 思考로부터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대학이라는 견지에서 政府와 企業들의 대폭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동시에 대학교육에서 학습의 주체가 되는 學習者들도 보다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적절하게 부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